

情報化社會를 위한 立法支援方案

李 英 俊*

차 례

- I. 머리말
- II. 情報·情報化·情報化社會, 情報保護·情報公開
 - 1. 情報·情報化·情報化社會
 - 2. 情報保護·情報公開
- III. 情報化의 役割
- IV. 우리나라의 情報化 水準
- V. 情報化에 따르는 問題點
 - 1. 情報保護와 情報公開
 - 2. 컴퓨터 犯罪
 - 3. 금융 犯罪
 - 4. 情報소의 계층의 증가
- VI. 情報化社會를 위한 立法支援
 - 1. 政策的·制度的 對應策
 - 2. 立法的 支援
- VII. 外國의 情報化 關係法
 - 1. 개 요
 - 2. 外國의 입법례
- VIII. 맺는말

* 法制處 法制情報課長

I. 머리말

우리는 이제 3化 시대를 맞고 있다. 개방화·민주화·정보화 시대가 그것이다. 이 중에서 정보화의 기본개념인 「情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逸話を 소개하고자 한다.

약 7년전 前 주미대사를 지낸 H氏와의 대담중에서 H氏는 理財의 秘法을 소개한다고 하면서 이 秘法의 첫 번째 요건은 정보(Information)를 갖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돈(Money)이 있어야 하며 세 번째는 決斷力(Determination)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위 세 가지의 순서대로 重要性에 대한 說明을 곁들여 하는 것이었다. 이 자리에서 筆者는 첫 번째인 「情報」의 順位를 최고의 순위로 하는데는 이의가 없지만 두 번째인 「돈」과 세 번째인 「決斷力」은 그 순서를 바꾸어야 한다고 역설하였고 H氏도 결국 동의하였다. 왜냐하면 富 내지 資産의 價値創造는 投資對象에 대한 「情報」를 수집한 다음에는 投資與 否를 결정하는 決斷력이 「돈」보다 앞서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돈」과 「決斷力」의 重要度는 차치하고, 「情報」의 重要性에 대하여는 누구나 대부분 공감한다고 믿는다.

인류사회의 발전은 대체로 수렵사회→농업사회→산업사회→정보화사회의 순으로 이루어져 왔다. 산업혁명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은 기계의 사용과 교통·통신의 발달에 기인한 것이다. 특히 정보화사회를 잉태하는 기반기술은 컴퓨터와 통신의 혁명적 발전과 양자간의 융합이다. 컴퓨터의 발달은 모든 정보의 디지털화와 즉시적인 처리를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제어를 자동화하게 되었다.

미래의 경제는 자본과 노동중심의 경제에서 지식중심의 경제체제로 전환할 것이 예상된다. 20세기의 산업사회와 21세기 정보화사회의 특징을 비교하면 <표 1>과 같다.¹⁾

1) 한국전산원 초고속정보통신기반연구반, 『21세기의 한국과 초고속 정보통신』, 9면.

〈표 1〉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의 특징

| 구 분 | 산 업 사 회 | 정 보 사 회 |
|------------|--|--|
| 사회변혁의 수단 | 산업기술을 바탕으로 한 산업 혁명 |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정보통신혁명 |
| 사회발전의 수단 | 에너지 및 자원집약적 대량생산에 기초 재화의 원활한 유통, 자원배분의 최적화에 의한 생산성 극대화 추구 | 정보, 교육, R&D 및 지식집약적 다품종소량생산에 기초, 개인의 창의력을 연결하고, 조직화하여 생산성을 극대화 |
| 사회의 중심가치 | 물질의 풍요로움 | 물질적 및 정신적 풍요 |
| 전반적인 사회 구조 | 이용자의 욕구에 관계없이 획일적인 선택이 강제되는 일원적 사회구조 | 이용자의 욕구에 기초하여 다양한 선택이 보장되는 다원적 사회구조 |

우리나라도 1996년 7월 1일을 기하여 위성방송시대가 열렸다. 시험방송이기는 하지만 KBS가 위성 1·2 채널을 통하여 첫 전파를 내보냄에 따라 고품질의 화면과 음향으로 한차원 높은 방송문화시대를 열어 정보화사회의 조기진입을 피하고 중국과 일본 등 외국에까지 우리 문화권을 형성하게 되었다. 위성방송시대를 맞아 점차 국경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는 것도 정보화시대를 맞는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Ⅱ. 情報·情報化·情報化社會, 情報保護·情報公開

우리나라도 언제, 어디서, 누구하고나 필요한 정보를 신속, 저렴, 편리하게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 1995년부터 2015년까지 45조2천500억원을 투자하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빠른 시일내에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정보화를 종합적으로 추진·조정하는 기반의 마련이 필요하나,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이 제정²⁾ 되었는데 정보화촉진기본법에서 사용하는 개념인 정보·정보화·정보화사회 및 정보보호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안)에서 정하는 정보공개를 定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情報·情報化·情報化社會

(1) 情報란?

「情報」라 함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 특정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電磁的)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1호).

현행 법령에서 정보에 대한 규정을 보면 헌법 제127조제1항³⁾에서 국가의 정보(과학기술관련)의 개발의무를 규정한 이래 여러 개별 법률에서 정보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만 무엇이 정보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정보화추진에 관한 기본법이라는 측면에서 정보에 대한 정의를 살펴 볼 수 있다.

정보는 특정목적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하므로 단순한 자료(data)와 구분하여 그 처리방식을 전통적인 전자(電磁: 電氣+磁氣)적 방식이외에 광(光)을 이용한 처리방식까지 포함시켜 기술변화와 발전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光섬유를 이용한 「光通信」이 정보통신神話시대를 열고 있는데 미래사회의 신경이 될 光通信은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정보를 먼 곳까지」 보내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2) 情報化란?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정의(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2호)

2) 정보화촉진기본법은 1995.8.4 법률 제4969호로, 동법시행령은 1995.12.29 대통령령 제14847호로, 동법시행규칙은 1995.12.30 정보통신부령 제14호로 제정·공포되었다.

3) 헌법 제127조제1항 :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하여 정보처리장치를 활용하여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사회활동전반의 비효율과 낭비를 제거하여 국가전체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情報化社會란?

정보화는 전산화(Computerization), 자동화(Automation) 및 네트워크화(Networking)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정보화사회는 이러한 3가지 특징을 활용하여 각종의 첨단시설이 일원화되어 활용되는 시대, 멀티미디어와 하이미디어 등 고도의 하이테크정보서비스에 의하여 모든 생활이 제어되며 이를 도구로 활용하여 필수적인 정보를 획득해야 하는 사회, 따라서 정보가 제3의 자산가치로 평가받게 되는 사회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정보화사회는 정보와 통신이 주요 생산수단이 되는 사회형태로서 기술의 혁신에 따라 컴퓨터와 통신기술이 융합되면서 사회 각 분야가 자동화·전산화되고 또한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사회전반적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탈산업사회라고 할 수 있다.⁴⁾

2. 情報保護·情報公開

(1) 情報保護란?

정보보호란 '정보의 모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중에 정보의 훼손·변조·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정의(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4호)하여 정보화에 수반되는 병리현상인 각종의 컴퓨터범죄와 컴퓨터바이러스 및 해커 등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2) 情報公開란?

정보의 공개라 함은 '公共機關이 이 法の 規定에 의하여 情報를 閱覽하게

4) 첨단기술의 집합체인 정보와 통신은 정보화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서로 결합되어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여 상호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들의 결합을 Telematics(Telecommunication+Information) 또는 C&C(Computer and Communication)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거나 그 寫本 또는 複製物을 교부하는 것 등'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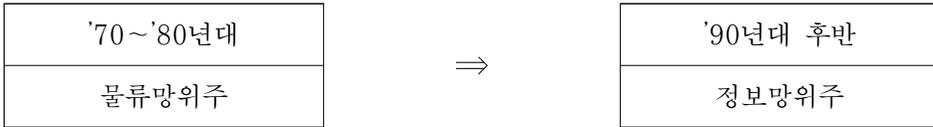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아울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무처에서 입법예고(1995.7.30~8.29)후 법제처에서 법안심의후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안)」에서의 공개대상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모체 등에 기록된 사항으로 하고(안 제2조제1호), 정보공개대상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안보나 외교관계 등 국익관련 정보와 국민의 생명, 신체보호 등 국익관련정보,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Ⅲ. 情報化의 役割

정보화는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한다.

첫째, 정보화는 경제발전의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미국의 권위있는 연구소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경 세계시장구조는 정보산업 및 관련산업이 세계경제의 60%를 차지하고, 정보화로 인한 부가가치는 전체 부가가치의 75%를 차지하며, 정보화관련 종사자의 규모는 세계전체고용의 50%를 차지할 것이라고 하여 정보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정보화는 새로운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한다. 통신개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90년의 경우 정보화로 인하여 교통대체 등 물류비용 절감효과가 1조5천억여원에 달한다고 하며 정보화의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원격의료, 원격교육 등 국민복지 향상과 지역정보화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보화의 역할도 물류망위주의 사회간접자본개념에서 정보화를 통하여 새로이 조명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정보화는 맑고 투명한 사회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사회개혁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금융실명제, 세제개혁, 토지공개념도입 등에 필수적인 수단으로 이는 정보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도입이 불가능한 제도라 할 것이다. 또한 One-Stop 서비스 등을 통한 효율적인 정부의 구현을 위해서도 정보화는 필수적인 도구로 요청되고 있다.

넷째로 정보화는 세계화의 핵심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인터넷(Internet) 등을 활용하여 모든 국민은 언제든지 외국과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업들도 외국의 고객에 대하여 사업을 전개하는 등 국경없는 경영전략의 필수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다. 제도뿐 아니라 의식과 생각까지 세계수준으로 확대하여 국민들의 동시활동영역을 세계화하는데 정보화는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IV. 우리나라의 情報化 水準

21세기 정보화사회에서는 경제의 원천이 물질이나 자본에서 아이디어와 정보로 이동하며 정보가 모든 힘의 원천이 되는 사회가 되므로 정보화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회현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전체적인 차원에서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기술의 종속과 아울러 신사회간접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통신구조가 외세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정보사회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 정책의 수립, 집행과 더불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환경의 조성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미국, 일본, EU 등 선진산업국들은 21세기에든 계속해서 정보화선진국(Advanced informatized country)으로 남아있기 위해 정보하부구조의 고도화와 정보통신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의 경쟁상대국인 대만, 싱가포르 등도 국가주도의 정보화추진 정책을 마련하여 고도의 정보사회진입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선진국들과 우리나라처럼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정보화 수준을 측정하고 비교·분석하였다.⁵⁾

정보화지수는 정보설비지표, 정보이용자료, 정보화지원지표의 지수를 단순 평균하여 산출하였는데 이는 정보화의 세 가지 서로 다른 측면이 같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표 2>는 각국의 정보화 수준을 한국의 '90년 수준을 100으로 하였을 때와 비교하여 '88년부터 '94년까지 시계열로 나타내고 있다.

<표 2>를 통해 우리 나라의 정보화 수준을 외국과 비교하여 보면 '88년의 경우 미국은 한국의 9.5배, 유럽 선진국들은 9배, 일본이 4.5배, 싱가포르이 8배, 대만이 2배의 수준에 있었고, '90년의 경우 미국이 9.3배, 유럽 선진국들은 7.8배, 일본이 4.5배, 싱가포르이 7.3배, 대만이 1.9배로 크게 변화된 것이 없었다. '94년에 이르러서는 미국이 한국의 8.3배, 유럽 선진국들은 5.5배, 일본이 3.6배, 싱가포르이 4.3배, 대만이 1.1배의 수준으로 격차가 좁혀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국가적 차원의 정보화 정책에 힘입어 조사대상국 중 우리 나라가 독일 다음으로 가장 높은 약 33%의 연평균정보화 수준 증가율을 보이며 성장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⁶⁾

<표 2> 주요국가간 정보화지표(총괄) 변화추이

한국 '90=100

| 국 가 | '88 | '89 | '90 | '91 | '92 | '93 | '94 | 비 고 |
|-------|-----|-----|-----|-----|-------|-------|-------|--------|
| 한 국 | 71 | 87 | 100 | 123 | 159 | 250 | 377 | 33.05% |
| 말레이시아 | 61 | 62 | 74 | 87 | 103 | 122 | 176 | 19.98% |
| 싱 가 폴 | 566 | 641 | 733 | 839 | 1,022 | 1,227 | 1,617 | 19.30% |
| 일 본 | 326 | 352 | 446 | 600 | 783 | 1,028 | 1,361 | 27.24% |
| 대 만 | 150 | 168 | 186 | 218 | 267 | 329 | 423 | 19.09% |
| 홍 콩 | 598 | 667 | 845 | 987 | 1,048 | 1,332 | 1,591 | 17.95% |

5) 한국전산원, 『1996 국가정보화 백서』 (1996.5.31 발행), 704면.

6) 한국전산원, 전계서, 705면.

| | | | | | | | | | |
|---|---|--------|--------|--------|--------|----------|----------|----------|--------|
| 영 | 국 | 553 | 589 | 617 | 661 | 862 | 1,269 | 1,695 | 21.61% |
| 독 | 일 | 383 | 407 | 498 | 694 | 1,062 | 1,681 | 2,282 | 35.83% |
| 프 | 랑 | 949 | 1,097 | 1,216 | 1,347 | 1,579 | 1,903 | 2,229 | 15.36% |
| 미 | 국 | 679 | 778 | 930 | 1,227 | 1,628 | 2,288 | 3,125 | 29.31% |
| 유 | 럽 | 628.20 | 697.73 | 777.17 | 900.69 | 1,167.27 | 1,617.74 | 2,068.81 | 22.40% |
| 선 | 진 | 578.98 | 647.25 | 755.03 | 908.01 | 1,140.52 | 1,532.58 | 1,985.58 | 23.04% |

정부는 '96.6.11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열어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는데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전부문에서 선진국수준의 정보화를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2000년까지 1단계로 모두 10조원을 투입, 정보화기반을 조성하게 된다.

2000년까지 정보화촉진을 위해 추진중인 10대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⁷⁾

○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

- 효율적인 전자정부의 목표는 정부기관별로 전산화를 추진하고 이를 초고속정보통신망으로 상호 연결해 정부기관간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기관내 정책결정과 행정업무 처리는 물론 기관간 협조업무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 또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동시에 각 부처에 분산된 복합민원의 일회처리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대국민 민원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PC통신 등을 통한 각종 증명발급 및 자동차 관련 민원종합처리 서비스를 개발하고 '98년부터 주민등록·운전면허·의료보험 등 7개 분야의 기능을 전자주민카드(IC카드)로 통합할 계획이다.
- 또한 국회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입법정보제공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법원·검찰·경찰 등 사법기관간 범죄수사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입법부·사법부 등 행정문서의 전자교환 및 전자우편·전자결재 등 정보서비스

7) 한국전산원, 정보화동향('96.7.1), 35면.

스를 도입하고 정부청사간 화상회의시스템을 운영한다.

○ 교육정보화 구축

- 교육정보화의 목표는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세계의 멀티미디어 교육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교육환경을 실현하는 데에 있다.
- 이를 위해 2000년까지 초고속정보통신망으로 초·중·고교의 70%(7천여개교)를 우선적으로 연결하여 인터넷 접속환경을 제공하고 2002년까지 모든 학교를 네트워크로 연결할 계획이다.
- 또한 '97년 말까지 다양한 원격교육방안을 시험운영하고 2000년까지 원격교육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다.

○ 학술정보 이용환경조성

- 2000년까지 초고속정보통신망과 연계해 1천5백만건의 학술정보 DB를 구축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 1천만건의 DB구축을 추진하며, 매년 4백만건의 각 대학 도서목록 DB를 구축하고 이를 네트워크를 통해 검색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개발한다.

○ 산업정보화 촉진

- 무역·산업기술·특허·유통 등 부문별로 추진되고 있는 단위무역 정보화사업을 상호연계시켜 정보활용도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 2000년까지 산업입지정보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단계적으로 DB화하고 '97년부터 '99년까지 정부 및 공공기관의 CALS 시범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CALS도입을 확산한다.

○ SOC 시설 활용도 제고

- 육상·해상·항공 등 물류체계를 전산화하고 공공·민간의 정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하여 기업의 물류 비용을 혁신적으로 절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0년까지 물류업무의 완전 EDI를 실현하고 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선진국 수준인 12%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 단계적으로 '96년까지 물류통합 EDI시스템 구축계획을 확정, 응용 SW를 개발하고 '97년에는 EDI시스템, 통합물류DB, 화물추적 시스템 등을

구축하며 2000년까지 이를 초고속화·첨단화하여 해외물류망과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지능형 교통시스템(ITS)을 개발하기 위해 올해까지 국가 전체차원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2005년까지 시스템별 연구개발 및 기본·상세설계 및 시스템을 구축한다.
-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구축하기 위해 도시지역·산악지형 등으로 구분해 2000년까지 단계별로 제작하고 '97년까지 과천지역에 지하매설물 관리체계 개발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지역정보화 지원

- 2000년까지 지역단위 지역정보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며, 시·군·구청 등 공공기관을 지역정보화 거점으로 활용하고 전국 3천여개 우체국간의 물류망·금융결제망 등을 연계·운용할 계획이다.
- 또한 2000년까지 농림수산 종합정보망을 구축하여 농림수산기관·단체 및 농어민간 원활한 정보이용 및 교환을 촉진하기로 하였다.

○ 의료서비스 고도화

-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 아래 2000년까지 전국 병원 및 보건소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종합의료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군단위별로 1개소 이상의 원격진료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 구체적으로는 PC통신을 활용한 통합외래진료예약시스템을 개발하고 단계적으로 의료기관을 네트워크로 구축한다. 이를 위해 '97년까지 진료예약정보센터와 3차병원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2000년까지 개인병원으로 확대한다.
- '97년까지 의료 EDI를 위한 표준서식 및 SW를 개발하고 병원정보 등을 종합 DB화 하며, 2000년까지 병원·의료보험조합·의약품업체간 EDI를 실현한다.

○ 환경관리 정보화

- 2000년까지 초고속정보통신망을 통해 환경부·지방환경청·지방자치단

- 체·사업체를 연결해 환경관련정보의 효과적 입수 및 공유체제를 확립한다.
 - 자연생태계·대기·수질 등 종합환경 DB를 구축하고 PC통신 등을 통한 환경정보서비스를 실시하며 2005년까지 GIS·시뮬레이션시스템 등을 구축하며 해외 환경정보망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99년까지 수해·화재 등 재난·재해 유형별로 전담기관이 중심이 돼 기능별 안전관리 DB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내용을 보완하며 '97년까지 중앙안전관리센터를 운영, 기능별 안전관리정보시스템과 지역안전관리센터를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99년까지 안전관리 통신망을 초고속정보통신망으로 전환하고 2002년 무선을 이용한 정보입력 및 검색·활용이 가능하도록 무선통신시스템을 고도화한다.
- 외교·국방 정보체계 확립
- '99년까지 모든 외교공관을 연결하는 외교전산망을 구축하는 등 2000년까지 외교정보 종합DB를 완성한다.
 - 국방정보체계구축을 위해 예산·시설관리의 정보종합체계 및 통합군수지원체계를 1, 2단계로 나눠 구축하고, 국방 CALS개념을 전자행정 및 전자거래로 발전시키며 전국 여단급 이상 부대간 국방온라인 정보통신망 구축 및 LAN 등 국방정보통신망을 확충한다.

V. 情報化에 따르는 問題點

1. 情報保護와 情報公開

정보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정보공개와 정보보호의 이율배반적인 요구가 공존하는 현실에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의 공개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인격과 감정의 침해를 방지해 주어야 한다.

정보사회에서는 개인의 신상정보가 경제활동상의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불법적인 노출로 인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

다. 개인의 신상정보와 관련하여 개인이 치명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자료의 오류는 한 번 발생하면 이의 수정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컴퓨터에 입력된 개인 정보를 종합하여 작성한 블랙리스트를 불필요한 기관에서 이용하거나 개인을 감시하는데 악용하는 행위도 중요한 문제이다.

한편 公共機關인 國家, 地方自治團體 등은 保有하고 있는 情報를 公開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과 아울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야누스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2. 컴퓨터 犯罪

컴퓨터 기술의 발전 및 확산 속도와 비슷한 속도로 관련 고급 기술이 악용되고 있다. 자료 기밀성의 강조, 네트워크 사용의 증대, PC의 확산과 시스템기술의 복잡화에 따른 시스템 자체의 취약성 증대와 같은 악의적인 컴퓨터 사용 가능의 위협 요소에 대비해야 한다.

컴퓨터 범죄의 유형에도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단순 터미널 조작이나 자료의 부정 입력 등과 같은 유형에서 시스템의 취약성을 공격하는 비인가된 침입이나 오용 등과 같은 해킹과, 저장된 정보를 손상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등 새로운 유형의 컴퓨터 범죄로 바뀌어 가고 있다.

해킹은 호기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국가나 기업 또는 개인의 기밀이 세상에 알려지거나 중요 자료가 삭제되어 버리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컴퓨터 바이러스 또한 치료법이 개발되기 무섭게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생되고 있어서 이로 인한 시간상, 재산상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3. 금융 犯罪

컴퓨터와 주변기기들의 성능이 날로 발전하면서 이를 이용한 금융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금융 범죄는 신용카드의 위조가 대부분이었으나 컬러 프린터나 복사기를 이용한 고액권, 수표, 어음의 위조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신용카드 위조는 암호해독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으며 지폐나 유가증권의 위조에는 정교한 스캐너와 컬러 프린터, 그리고 정교한 컬러 복사기가 이용된다. 이러한 첨단 기기를 이용한 금융 범죄는 단속이 보다 철저히 이루어지

지 않는 한 계속 불법적으로 유통되어 범죄 확산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한 현금자동지급기나 입출금자동기기의 점외설치가 많아짐에 따라 이들 기기를 파손시키고 현금이나 수표를 절취해 가는 범죄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 단말기의 보안 관리에 허점을 보여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옥내용과 옥외용 현금자동지급기에 대한 설치 기준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단지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옥내용을 옥외에 설치하여 범죄 무방비 상태를 자초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4. 情報소외계층의 증가

정보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과 정보 전달에 대한 비용이 저렴해짐에 따라 지역간, 계층간, 연령간 정보 수용 격차가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다.

각 기업에서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짐에 따른 여파로 인력 증가 억제나 인력 감축의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변화된 현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사람들이 증가되는 사회적 문제도 야기되고 있다.

자신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도 국가사회 다방면에서 정보화는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생활이 변하고 있다.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인간의 의식과 사회의 가치관, 삶의 목적과 형태가 바뀌는 새로운 시대에 대기업이나 일부 엘리트층에게만 정보가 집중되어 정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어 갈 우려가 있다.

VI. 情報化社會를 위한 立法支援

1. 政策的·制度的 對應策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방지하여 정보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감소시키고 국민적 지지를 지속적으로 획득하여 정보화를 순조롭게 진행해야 한다.

날로 증가하고 치밀해지는 컴퓨터 범죄 등 각종 정보화 관련 부작용과 이용자 보호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대응책이 미비한 상황이다. 특히 컴퓨터 시스템 안전과 보안에 관한 기술 확보가 미미하고 컴퓨터 관련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됨에 따라 국민의 정보화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또한 다양한 불건전 정보의 유통에 대한 대응 미흡으로 청소년에 대한 악영향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실정이다. 특히 청소년들의 불건전한 PC통신 활용에 대한 교육적 악영향도 점차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1) 안전 보안 대책

안전 보안 대책으로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비인가자에 의한 정보 유출 및 조작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암호화 기술의 개발과 보급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과 이에 따른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지진이나 화재에 대비한 전산망 보호 대책도 수립되어야 한다.

콘솔 조작, 자료의 부정 입력, 프로그램 변조, 자료의 부정 유출 등은 내부자에 의한 범죄 형태인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물리적 보완이나 비상 복구 절차의 확립과 아울러 자료 비밀성 등의 지침의 준수를 강조한 컴퓨터 보안 노력이 필요하다.

암호화(Cryptography)나 특수 마이크로칩이 장착된 새로운 하드웨어의 개발 또는 소프트웨어 활용에 의한 방지책 등 컴퓨터 보안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최첨단 기술과 정보를 소화한 후 이를 교육시키며 배포하고 우리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작업을 지속해야 한다.

(2) 불건전 정보유통 방지 대책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능을 한층 강화하여 불건전 정보유통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국민의 기본적 윤리 인식을 진작시키도록 해야 한다.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 게시판에 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나 음란물 등이 청소년들에게 무차별하게 노출되는 문제를 방지하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음란성 정보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장치를 컴퓨터 자체에 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법화 움직임도 있는데 우리 나라도 이러한 불건전 정보유통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때이다.

불법 소프트웨어의 유통 문제는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도 근본적인 사고가 바뀌지 않은 계층이 있다. 이러한 불법 소프트웨어도 일종의 불건전 정보유통 방지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3) 이용자 보호 대책

정보기기 사용에 대한 안전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이용자 피해에 대한 구제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컴퓨터 보안 사고 대응팀을 소규모로 별도 운영하면 신속한 사고처리 기능 이외에 조직의 컴퓨터 보안위험을 감소시키는 사고 예방 기능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용자 보호 대책으로서 이용자 교육의 충실화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민간 이용자보호단체를 지원, 육성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2. 立法的 支援

'95년도에는 지난 수년 동안 부처간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되어 왔던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사회의 정보화촉진과 정보통신산업 기반조성 및 초고속정보통신 기반 구축 사업 등을 범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재원(정보화촉진기금)을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내 통신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신사업 전반에 걸쳐 경쟁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신사업 경쟁력강화대책의 수립과 신규사업자 허가를 위한 허가신청 요령의 공고로 WTO 기본통신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통신사업 경쟁체제 구축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국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디지털 이동전화시스템의 상용화 성공으로 무선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발판을 구축하였으며 미래 정보사회의 핵심산업이 될 소프트웨어와 멀티미디어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기반을 정비하였다.

(1) 정보화촉진기본법

국가사회의 정보화와 정보화를 뒷받침할 정보통신 산업의 육성이 요청됨에 따라 다가올 정보사회에 대비하여 국가사회 각 분야의 정보화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통신 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부처간에 산재된 정부의 관련 기능을 체계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일찍부터 제기되었으나, 범정부 차원의 입법은 번번히 좌절되다가 '94년 12월 정부조직개편으로 '정보통신부'가 발족됨으로써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제정을 중점 추진하여 '95년 7월 임시국회 의결

을 거쳐 동년 8월 4일에 공포하게 되었다.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은 정보통신 시책에 관한 법적인 기반 마련과 정보통신 시책추진의 체제가 정비된 데 가장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정보통신부가 설치되었으나 타 부처·기관과의 관련 업무 수행관계에 있어서 명쾌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법의 제정으로 정보화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 등의 조직체제가 정비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각종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정비되었다 할 수 있다.

아울러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전산망조정위원회와 초고속정보화추진위원회는 폐지하고, 동위원회에 흡수·통합하는 것으로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되었다. 재정건전화 원칙에 입각한 기금통폐합 방침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촉진기금을 설치한 것은 그 중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전기통신기본법·종합유선방송법 등 기존 관련법내용과 유사 내지 중복된 사항을 포함하는 점에 있어 이의 해소가 필요하며, 이 법의 정보화추진위원회는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통신위원회와 업무가 중복되고 또한 한 지역의 각종 통신시설을 독점하는 초고속망사업자의 출현으로 지역별 사업자가 난립하고 한국전력 등 고유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공기업들이 통신사업에 뛰어드는 혼란이 예상된다.

(2)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80년대 초, 통신과 컴퓨터의 결합으로 대변되는 정보화의 물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범정부적인 노력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국가사회 정보화촉진과 정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자공업육성방안 확정('81년), 정보산업육성위원회 구성(위원장 : 대통령비서실장, '83년 5월)과 국가기간전산망사업계획 확정('83년) 등이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정부는 이를 체계화하고 H/W, S/W 서비스가 통합된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우리 나라 고유의 정보화 모델로 일컬어지는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보화

사회구축 관련법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은 ‘94년 1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체신부가 정보화의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고,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정보화촉진, 정보산업육성, 초고속정보통신 기반 구축 등 정보화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제정(’95.8)됨에 따라 그동안 국가기간전산망 사업 등 국가사회 정보화의 추진체계였던 전산망조정위원회를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로 통합하여 일원화하고,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중요시되는 전산망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 이용활성화 등에 역점을 두어 전산망에 관한 개별법으로 정비, 보완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허가 등의 민원업무에 EDI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의 정의와 전자문서의 효력, 도달시기, 공개 및 위작, 변작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다.

둘째, 전산망에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기준에 추가하여 전산망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기준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전산망 관련기기에 대한 형식승인 규정을 삭제하고, 전산망에 관한 표준적합인증제도를 신설하는 등 전산망 표준관련 제도를 정비하였다.

넷째, 전자문서를 위작·변작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벌금을 현실화하였다. 그러나 「전자문서」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위탁을 받은 자가 전산망을 이용하여 전송·처리 또는 보관하는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 된 것’으로 정의(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하고 있으므로 국가기관 등의 공문서성격의 전자문서에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따라서 동 사무서의 위작·변작 또는 훼손 등의 경우 벌칙적용이 배제되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의 보완이 필요하다.

앞으로 EDI 관련분야에 깊이 있는 기술적·법적 연구가 많이 행해질 것은 물론, 기술적 지식을 가진 법률가를 양성하고, EDI를 고려한 현행 법체계의 개선, EDI의 사법절차에의 도입을 통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도모할 것 등이 요망된다.

(3)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94년 1월 7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95년 7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약 3만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은 '95년 1월 8일부터 컴퓨터로 처리되는 모든 개인신상정보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유출시키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공공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95년 7월부터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개개인에 대한 정보사항을 본인이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청구받은 기관은 30일 이내에 해당 개인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국민이 잘못 입력된 개인정보에 대해 고쳐줄 것을 요구하면 공공기관은 역시 30일 이내에 정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호대상인 개인정보는 주민등록, 병역사항 및 각종 납세자료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모든 정보이다. 그러나 이 법에서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은 공공부문으로서의 대표적인 '공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다(동법 제1조 및 제2조와 동법시행령 제2조). 그런데 사부문(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는 현재 방치된 상태이다.

얼마전 모백화점에서 거래선에 대한 신상카드가 유출되어 거래선에 대한 개인정보를 지득한 악의의 습득인에 의한 범죄등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된 사례가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에 대한 법적보완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었고, '96년 7월 1일 시행되는 형법의 컴퓨터범죄에 대한 처벌이나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및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상의 개인정보보호 대상에서도 위 사례에 나타난 보호는 「공공기관」이나 「신용집중기관」이 아닌 순수한 민간부문인 사설 백화점으로서 동법이 정하는 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법규적용의 곤란을 가져오는등 프라이버시 침해와 범죄가능성예방에 있어서 보완적인 입법조치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4)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안)

정보공개제도란 국민이 국가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정부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즉,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알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실정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청구권의 주체, 청구권의 기본적인 내용과 한계, 공공기관의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헌법상의 알권리를 사법적인 구제의 대상이 되는 실정법적인 권리가 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정보공개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92년 정보공개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를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하였다. 또한 '정부공문서분류및 보존에관한규칙'을 개정하여 정부기능의 분류에 있어 기존의 분류체계에 정부기능을 10진 분류에 의해 분류하도록 하는 주류기능을 신설하는 등 문서의 분류 및 검색체계를 합리화함으로써 정보공개제도의 도입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체제를 구축하였다.

'93년부터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이미 정보공개제도를 제정 및 시행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와 '94년에는 스웨덴, 네델란드, 프랑스 등 유럽제국, '95년에는 호주와 뉴질랜드 등을 방문하여 입법조사 및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여 정보공개법(안)을 만드는 데 반영하였다.

'94년 3월 국무총리훈령 제288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을 제공 및 시달하여 행정정보공개제도시범운영에 관한 일반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94년 7월부터 시범적으로 '92년 이후 작성된 문서를 대상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정보공개를 실시하였다. 본격적인 입법추진을 위해 '94년 7월 정보공개심의 위원회를 발족하여 '95년 9월까지 제13차 입법심의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정보공개법 시안을 마련하여 법제처의 법안심의를 거쳐 '96년 8월 13일 국무회의에서 동법 제정안을 의결하였다. 동법은 앞으로 국회에서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나, 동법이 '95년 7월 입법예고 당시보다 비공개대상이 지나치게 늘어났다는 점과 정보공개위원회가 삭제되고 행정심판으로 대체된 점 등에서 소극적 효과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5) 방송법(안)

위성방송 등의 법적근거가 될 방송법개정안은 '95년에 현행방송법과 종합 유선방송법을 통합한 법률개정안으로서 일반인이 통상 부르는 『(통합)방송법(안)』으로서 공보처가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하고, 정보통신부와의 힘겨운 협의과정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국회심의과정에서 난항을 거듭, 드디어 14대국회의 폐회와 더불어 폐기되었다.

그러나 위성방송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통합방송법 제정은 15대 국회에 들어서도 필연적이라고 사료되고 있으나 아직 기본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데, 문제점으로서 첫 번째가 위성방송 12개 채널의 허가에 있어서 공보처와 정보통신부의 입장이 다르고 두 번째는 위성방송수신기의 보급이 현재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라는 것이다.

위성방송은 아직도 케이블TV와 조화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방송의 생명이라고 할 프로그램도 대부분 지상파 방송의 재탕인 현실속에서 1백만원대의 수신기와 3백만원대의 내장형 와이드 TV를 사기는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이다.

위성방송이 제위치를 찾기 위해서는 '97년말의 본방송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위성방송에 맞는 프로그램개발과 수신기 등의 생산장려 및 가격인하로 수신기 보급의 저변확대를 이루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중심의 프로덕션 및 인재양성을 서두르고 정부도 이와 조화를 이루는 방송정책 및 입법지원이 시급하다.

(6) 기타 정보화와 관련된 立法的 支援

위에서 열거한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안) 및 방송법(안) 외에 정보화와 관련된 입법적지원현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 법령명칭 | 주요내용 | 참고사항 |
|--|--|---|
|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개정: '95.12. 6 (법 제4996호) 시행: '96. 6. 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저작권 존속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저작권은 공표된 다음 연도부터 50년간 존속(법 제8조제3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의 규정은 창작한 때부터 50년 존속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입학시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에 공표된 프로그램 사용 허용(법 제12조제5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복제물의 전송행위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거나 배포하는 자 처벌(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제26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기관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저작권을 신탁 관리하는 전문기관을 지정, 위탁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 • 프로그램저작권의 소급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7. 7. 1 전의 창작프로그램은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소급하여 보호함(부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저작권 집중관리 제도 신설 • UR지적소유권 협정에 따라 보호 |
| 소프트웨어개발 촉진법 (전문개정) 개정: '95.12. 6 (법 제4997호) 시행: '96. 6. 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의 기본시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유통촉진 환경조성, 전문인력양성, 신규수요창출 및 이용촉진 등(법 제3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추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프트웨어품질보증기준 및 기술성 평가 기준의 대가기준 등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품질향상과 신뢰성 확보, 유통촉진을 위하여 품질보증 기준을 제정(법 제8조) - 소프트웨어 구매, 용역계약 체결에 적용되는 기술성 평가 기준의 제정(법 제9조) - 공공기관 등에서 소프트웨어 용역체결에 적용되는 원가계산용 대가기준을 제정(법 제10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프트웨어 진흥사업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프트웨어 관련기관, 설비, 정보 등을 집중화시켜 소프트웨어 진흥구역 지정 (법 제11조) -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자금 용자시 채무보증제 실시 -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공제사업 추진(법 제12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프트웨어 담보설정에 채무보증제도 신설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한 법인체로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신설(법 제 13조) | |
| <p>원격영상재판에 관한특례법 제정:'95.12. 6 시행:'95.12. 6</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격 영상재판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 등 재판관계인이 교통불편으로 법정출석이 어려운 경우 동영상과 육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원격지법정에 출석하여 재판함(법 제 2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법 서비스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격 영상재판을 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액사건·즉결사건 등 시·군 법원의 관할사건으로 정함(법 제3조) | |
| <p>등기특별회계법 개정:'95.12. 6 시행:'96. 1. 1</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기특별회계의 세입·세출항목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기업무의 전산화추진 사업과 등기소의 신설 등(법 제3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기사무전산화 추진 |
| <p>저작권법 개정:'95.12. 6 시행:'96. 7. 1</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저작물의 소급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에는 조약발효일 이전에 발행된 것은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나 조약발효 이전에 공표한 것도 소급보호함(법 제3조, 제61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협정의 반영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번역권에 관한 강제허락 제도의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협정에 대비하여 저작물을 번역함에 있어서 저작권자와 합의가 안될 경우,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번역하였던 강제허락제도 폐지(법 제49조)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저작물의 소급보호에 따른 경과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규정에 의하여 보호기간 만료로 권리가 소멸된 저작물의 적용제외(부칙2) - 회복저작물 등의 복제물로서 '95. 1. 1 전에 제작된 것은 '96.12.31까지 배포할 수 있음(부칙 제4조제2항) | |
| 음반및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 개정:'95.12. 6 시행:'96. 6. 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멀티미디어추세에 따른 새 영상물의 윤리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에는 비디오물의 범위에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을 제외하였으나, 영화·음악·게임 등이 수록된 것은 포함시켰음(법 제2조) · 일률적인 사전심사 제도 및 제작 신고제도의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에는 비디오물을 수입할 경우 허가를 받았으나, 공연윤리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완화 - 음반에 대한 일률적인 사전 심의를 폐지하고,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음(법 제17조) - 비디오물의 제작신고제도를 폐지하여 영상산업의 규제를 완화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 사전 허가제도 폐지 |
| 관세법 개정:'95.12. 6 시행:'96. 7.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세를 면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이저판독장치용 디스크, 마그네틱테이프 등에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수록되었을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함(법 별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 관행에 일치 |
| 공업발전법 개정:'95.11.22 시행:'96. 1.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발전기금의 명칭을 산업기반기금으로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의 구축을 위한 생산공정개선, 유통산업구조 개선 등에 기금을 지원(CALS 도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공정, 유통산업 구조개선 등 지원 |

| | | |
|--|--|--------------------------|
| 어음법, 수표법 개정:'95.12. 6 | · 종전에는 어음·수표의 형식요건으로 반드시 '서명'도 통용하도록 함('전자서명'의 도입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임) | · 전자서명 도입의 기초가 됨 |
| 유선방송관리법 개정:'95.12. 6 | · 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 설치에 앞으로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의 설비를 이용 · 공보처장관의 허가·승인 등을 앞으로는 정보통신부장관이 행함 | · 공보처에서 정보통신부로 이관 |
| 형법중 개정 개정:'95.12.29 시행:'96. 7. 1 | · 형법을 대폭 개정하여 컴퓨터 범죄 처벌 조항을 신설 - 컴퓨터사용 사기행위, 정보처리업무 방해, 전자기록 등 허위작성, 변작, 전자기록 등 손괴행위 처벌 | · 컴퓨터 범죄 벌칙 강화 |
| 상법중 개정 개정:'95.12.29 시행:'96.10. 1 | · 상업장부 등을 컴퓨터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 상업장부, 기타 중요서류 컴퓨터 처리 가능, 컴퓨터 처리된 기록으로 보존, 기명날인을 '서명'으로 가능, 상업등기의 컴퓨터 처리 | ·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상업등기 전산 처리 |

자료 : 한국전산원, 전계서, 653면

VII. 外國의 情報化 關係法

1. 개 요

정보기술과 정보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정보화와 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등 제반 정책을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다.⁸⁾

미국의 NII(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일본의 신사회자본, 캐나다의 정보고속도로 구축, 유럽연합의 TEN(Trans-European

8) 한국전산원, 전계서, 719면.

Network), 싱가포르의 IT2000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각국간 정보화 계획의 추진은 또한 국제적 협력의 기반 위에서 점차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의 알 고어 부통령이 '94년 3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 세계정보통신개발회의에서 세계정보통신 기반(GII : 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의 구축을 역설한 이후 이를 계기로 구체적인 노력들이 가시화되고 있다.

'95년 2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G7 정보통신장관회의에서는 정보사회를 대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향후 세계정보기반의 구축 방향 등과 관련하여 알 고어 부통령이 제시한 5가지의 원칙에 부가하여 3가지 원칙을 추가로 채택하였다.

- 민간부문의 투자 유도
- 경쟁의 촉진
- 유연하고 공평한 규제 체제의 확립
- 공개접근 보장
- 보편적 접근 제공
- 일반인의 이용기회 균등화
- 각국의 문화 및 언어의 다양성 존중
- 개도국을 배려한 국제적 협력 추진

G7 정보통신장관 회담에서는 기본원칙의 채택과 더불어 GII의 실현을 구체화할 수 있는 11개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추진 또한 결정하였으며 G7 파일럿 프로젝트의 개요는 <표 4>와 같다.

<표 4> G7 파일럿 프로젝트

| 프로젝트 | 개요 | 주도국 |
|------------------|---|-----------------|
| 세계정보화사업 목록작성 | 정보사회 발전에 관한 국내외 프로젝트 및 조사연구 등에 관한 멀티미디어 목록 작성 | 유럽연합 |
| 광대역 네트워크의 국제적 운용 | 첨단 응용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고속네트워크, 테스트베드간 접속 및 표준화 | 캐나다, 독일, 일본, 영국 |

| | | |
|----------------|------------------------------------|----------|
| 이문화간 교육/훈련 | 혁신적 어학교육 훈련을 학생 및 중소기업에게 제공 | 프랑스, 독일 |
| 전자도서관 | 정보의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로 세계적 전자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 프랑스, 일본 |
| 전자박물관 | 세계문화유산정보의 멀티미디어화 | 이탈리아 |
| 환경 및 자원 관리 | 환경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접근 | 미국 |
| 재난관리 | 긴급사태에 대한 대응 및 구난정보 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캐나다 |
| 보건의료 | 원격의료 및 의료정보의 국제적 교류 | 유럽연합 |
| 정부 온라인 | 행정기관간 각종 정보교류의 전자화 | 영국, 캐나다 |
| 중소기업을 위한 시장 제공 | 중소기업에 적합한 정보의 상호교환 및 EDI 등 추진 | 유럽연합, 일본 |
| 해사 정보시스템 | 해양관련 주요정보의 상호교류를 통한 환경 보호 및 경쟁력 강화 | 유럽연합 |

GII와 더불어 지역내에 정보화 또는 정보통신기반의 구축과 관련한 국가 간 협력노력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중 대표적인 것이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이 추진하고 있는 APII는 '94년 11월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들간 경제협력과 상호이해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통신기반의 구축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95년 5월에는 서울에서 APII 구축 논의를 위한 APEC 정보통신장관회의가 열렸으며 여기에서는 APII 구축을 위한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과 방향을 담은 서울선언이 채택되었다.

- 각국의 현실에 기초한 통신과 정보통신기반 구축의 장려
- 경쟁환경의 촉진
- 민간부문의 투자와 참여 장려
- 유연한 정책과 규제 체계 창출
- 회원국간의 협력 강화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격차 해소
- 정보통신망에 대한 개방접근 제공
- 서비스 제공과 접근의 보편성 확보
- 문화적 그리고 언어적 측면의 다양성 증진
- 지적소유권 보호, 개인 사생활과 정보의 보완 확보

2. 외국의 입법례

전세계적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정보화 추세의 흐름을 입증하는 정보화관계법 중에서 전기통신관련법령·유선방송 및 컴퓨터관련법령 등 정보화산업의 기반조성과 관련된 외국입법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⁹⁾

- 〈미 국〉 · 1988년컴퓨터보안법
- 1991년고성능컴퓨터법
- 전자식자금이전법
- 〈영 국〉 · 1985년대이터보호심판소규칙
- 〈프랑스〉 · 컴퓨터프로그램의법적보호에관한유럽공동체의회의준칙이행및 지적재산권법개정에관한법률
- 〈독 일〉 · 전신로법
- 우편제도및원거리통신의새로운규율을위한법률
- 〈중 국〉 ·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령
- 컴퓨터정보체계안전보호령
- 유선텔레비전관리규정
- 위성텔레비전방송지상수신시설관리규정
- 위성텔레비전방송지상수신시설관리규정시행세칙
- 〈대 만〉 · 전기통신법
- 국제데이터통신규칙
- 데이터통신규칙
- 국내위성통신규칙

9) 법제처, 주요국가의 정보화관계법(법제자료 제168집, 1995), 목차 참조.

외국입법례의 입법배경, 법률의 개요, 주요골자 및 법률의 내용은 동자료집을 참조.

- 〈일 본〉 · 정보처리의촉진에관한법률
 · 지역소프트웨어공급력개발사업추진임시조치법
 · 전기통신기반충실임시조치법
 · 특정통신·방송개발사업실시원활화법
- 〈싱가포르〉 · 싱가포르통신공사법

VIII. 맺는말

현재 세계 각국은 21세기의 고도정보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하부구조의 고도화와 정보통신산업의 전략적인 육성계획을 국가주도하에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가기간전산망사업과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단위부처별, 단위업무별로 정보화를 추진함으로써 추진방향의 혼선과 중복투자는 물론 정작 필요한 분야의 정보화가 부진한 현상을 초래하는 등 국가전체로서 일관된 추진전략과 추진체계의 정립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정보통신산업부문에서도 전화서비스, 통신기기 및 메모리 반도체 등 일부분야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나 컴퓨터·방송장비 등 정보기기와 데이터베이스·소프트웨어 등 정보처리산업 분야 등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낙후된 수준이며, 정보통신산업을 담당하는 정책기능의 분산으로 정보통신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이 미흡할 뿐 아니라 정부의 산업육성 지원정책도 제조업분야에 치중되어 있어서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이 요망되고 있다.

따라서 정보화촉진기본법 등 정보화관련법을 제·개정하여 정보사회의 도래와 WTO체제에 의한 정보통신산업의 전면적 개방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의 향상과 정보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입법지원한 것은 정보화사회 구현의 진일보된 면을 보여주었다고 본다.

우리나라도 정보화정책 지원을 위하여 청와대에서 '96년 5월 3일자로 정보화추진사업의 대통령에 대한 정책보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보화추진 확대회의』를 신설해 운영하고 경제수석실에 『정보통신비서관』을, 정책기획수석실에 『정책4비서관』을 각각 두어 정보화 관련업무를 담

당하도록 하였다.

정보통신비서관은 업무영역이 확장된 정보통신부 관련업무를 지원조정하고 정보화 및 정보산업 관련시책과 과제를 관리지원하게 된다. 또 정책4비서관은 정보화추진 확대회의를 운영하고 정보화관련 장기정책을 발굴·기획·추진하며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및 산하 실무추진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지원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와 함께 정보화추진확대회의는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 민간자문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민관합동의 추진체제로 운영될 계획이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정보화추진사업은 정보화관련사업이 그 규모의 방대함·다방면의 기술과 관련된 고도의 복잡성과 우리 경제사회에 미칠 엄청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¹⁰⁾

첫째, 민간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시장현실을 가능한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은 통신망컴퓨터, 데이터베이스, 가전제품 등을 유기적으로 한데 묶어 엄청난 양의 멀티미디어정보를 이용자에게 고속으로 전달하는 네트워크이다. 따라서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동시에 우리 현실의 급변에 따른 불확실성도 큰 실정이다. 그러므로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추진은 위험하며 더욱이 부처이기주의에 따른 주도권다툼은 어불성설이다. 민간주도의 불가피함은 총투자의 대부분을 민간부문에서 조달하도록 계획된 이번 청사진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규제보다는 경쟁원리를 바탕으로 산업경쟁력을 키우면서 공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둘째, 복잡하고 다양한 관련기술의 개발 또는 도입, 관련기술 및 기기의 안정성 평가, 제휴 외국업체의 선정, 통신망의 표준규격결정 등에서 정부는 관련 기업들의 이해를 조정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관련 산업의 엄청난 성장성을 노리고 선진각국의 이해다툼이 치열한 마당에 후발주자인 우리의 경우 정부의 조정역할은 중차대하다. 다만, 정부의 시장개입 방식은 직접개입은 선도시험망 및 국가기간통신망의 구축정도에 그치고 여건정비, 관련기술의 개발지원 등을 통해 적기에 시장에 신호를 보

10) 한국경제신문, '95.3.16, 5면, 사실 참조.

내는 간접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정보화추진계획은 장기발전계획이니만큼 단계적 추진을 거치는 과정에서 적지않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일관성을 유지해야겠으나 세부적인 시행방안은 관련 업계와 협의하여 시기를 놓치지 말고 대응하는 노력과 함께 이러한 정책방향을 지원할 수 있는 입법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